

2023년 『전라북도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R&D 지원계획 공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이차전지 신기술 연구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관련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사 업 명	• 2023년도 전라북도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내용	• 전라북도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7건 정도(지정공모형 5건, 자유공모형 2건), 1건/기업 ※ 선정 결과에 따라 추가 선정 등 변경 가능
지원유형	① 지정공모형 : 선도기술융합형, 생산기술융합형 RFP ② 자유공모형 : 자유주제로 신청
지원분야	• 이차전지 관련 기술개발 분야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이차전지 기업(전후방 연관기업 포함), 대학, 연구기관(출연연 등) 등 ※ (지정공모형) 컨소시엄 구성 필수, (자유공모형) 기업단독 참여 가능

구 분	지정공모형		자유공모형
	RFP 1. 선도기술융합형	RFP 2. 생산기술융합형	
개요	-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핵심요소 기술개발 -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및 재활용 소재분야 상용화 촉진 기술 개발	이차전지 관련 기술개발
지원금액 (과제당)	400백만원 이내/년	250백만원 이내/년	100백만원 이내/년
지원기간	2년(1년 + 1년) *단, 2차년도 수행여부는 1차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1년
신청자격	3. 신청자격 및 4. 지원제외 대상 참조		
지원기준 (지방비)	총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업 단독과제의 경우 현금비율은 민간 부담금의 20% 이상		
기술료 징수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총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총 지원금의 20%, 대기업 총 지원금의 30% ※ 대학, 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제외		
우대사항	(고용창출) 과제당 신규 채용 계획 제출 과제 (정책연계) 군산강소특구 입주기업 개발 수행 과제 (상용화촉진) 대기업 등으로부터 구매 확약을 받은 물품에 대한 개발 수행 과제		
기타사항	(지정공모형) 컨소시엄 구성 및 군산 소재 이차전지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 1개사 이상 필수 참여 (자유공모형) 기업단독 참여 가능하며 군산 소재 이차전지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 참여 시 우대가점 부여		

※ 유형별 선정건수, 지원금액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예정

3

신청자격 ※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

☐ 주관 : 공고일 기준 현재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이차전지 연구기관(출연연 등) 및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참여

- 참여기업 : 공고일 기준 전북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소재하고, 도내에 투자(이전, 증설 등)한 이차전지 소재·부품 관련 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 참여기관 :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특화센터,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함. 단, 도외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을 제시 해야함

☐ 컨소시엄 구성

구 분	구 성 내 용
지정공모형	○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 - 연구기관 + 기업 매칭 필수 - 군산 소재 이차전지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 1개사 이상 참여 필수
자유공모형	○ 기업단독지원 가능

4

지원제외 대상

☐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최근 2년(2021년~2022년) 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여부 예시]

구 분	유동비율		부채비율		지원여부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A기업	49%	47%	300%	400%	X
B기업	55%	60%	550%	650%	X
C기업	20%	75%	600%	320%	O
D기업	100%	40%	400%	540%	O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등기 임원 예외)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과제 3개, 연구개발과제 5개) 참여를 제한함(3책 5공 적용)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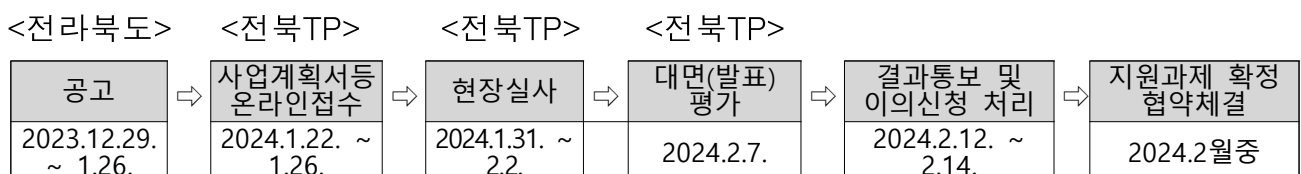
※ 과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자격 적정성 평가 진행

5

신청 및 접수방법

- ☐ 접수기간 : 2023. 12. 29.(금) ~ 2024. 1. 26(금) 16:00까지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http://rnd.jbtp.or.kr>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
 -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전북테크노파크 R&D관리 홈페이지] 참조
 -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 평가절차 및 일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 지역R&D 공고에서 확인

No	제출서류	지정 공모형	자유 공모형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	○	주관
2	참여의사확인서 각1부	○	○	주관 참여
3	최근 2년간('21~'22) 결산확정 재무재표 각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주관 참여
4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 공장 미등록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주관 참여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주관 참여
6	신청자격 자기진단서 각1부 ※ 주관 및 참여 각각 제출	○	○	주관 참여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	주관 참여
8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주관 참여
9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주관 참여
10	군산시 제외 기업 매칭 협약서	○	○	주관 참여

* 본사가 도외일 경우, 입주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관련문의 :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단 이차전지소재융합팀

(☎ 063-261-9755, e-mail : dklee@jbtp.or.kr)

6

(도비)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출연금은 참여기업 유무, 기업유형 등에 따라 사업비의 80%이내로 하고,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을 원칙함 (단, 기업 단독의 경우 민간부담 현금 비율 20%이상)

※ (예시) 도지원금 100백만원(80%), 민간부담금 25백만원(20%)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25백만원의 10%인 2.5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현물 22.5백만원 이내)

7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기술성,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기여도 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40)	창의·도전성	•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10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20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내부 보안관리 체계,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 회피 방안 적정성	10
사업성(30)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를 위한 후속투자계획의 충실성 • 기업성장성 및 재무안전성 등 사업화 역량	30
기술개발 역량(20)	기술개발역량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10
		• 연구윤리	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파급효과(10)	파급효과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5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합계			100

8

추진절차

과제 신청·접수 (사업설명회 : 24.01.12.)	○ (재)전북테크노파크	24.01.22 ~24.01.26
현장실사 및 대면 평가	○ 현장실사(전북TP) ○ 평가위원회(전북TP)	24.01 ~24.02
협약체결	○ (재)전북테크노파크 ↔ 주관기관	24.02
사업수행·관리	○ 주관기관	~24.12
진도보고 및 중간점검	○ (재)전북테크노파크	24.09
최종점검·최종평가	○ 평가위원회(전북TP)	24.11
사업비 정산	○ (재)전북테크노파크 [회계법인]	24.12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 (재)전북테크노파크	25.01

□ 신규고용 : 과제당 1명이상 신규고용 의무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3. 6. 28. 이후) 신규채용 연구원에 대해 인건비 24.7백만원이내로 사업비(현금)에 산정 가능
 - ※ 협약 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 시 참여인력변경 보고를 한 경우만 인건비 지원 가능
 - ※ 학력제한 없음
 - (단, 현금 인건비 지급 연구원일 경우,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노트에 성실히 기재해야 되며, 연구노트 불성실 작성 및 미작성시 인건비 전액 불인정)
 -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시 인건비 지급불가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 불가
- 외국인 채용 : 주관 및 참여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참여인력으로 등재시 인건비 지급 불가. 단, 여비는 지급가능

□ (공통)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최소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함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시 연구노트 작성 확인예정

□ 선정 후 협약대상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과제의 정량목표는 추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신규고용 의무조건' 불충족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성실실패'이하로만 평가함)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2년간 분할납부 가능

(**기술료 납부 통지 후 1개월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 전라북도 도비지원R&D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지침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이미 개발된 R&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
-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책임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제도를 폐지함
 - 컨소시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만 구성
-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전라북도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 조례,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규정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참고] 사업비 편성 기준

세 목	내 용
인건비	☐ 인건비 ○ 기업 : 본 R&D과제를 통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2023.6.28. 이후)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금 인건비 24.7백만원 이내 산정이 가능함 ⇒ (신규인력) 인건비 한도 : 기업당 24.7백만원 ⇒ (기존인력) 인건비 한도 : 기업당 신규인력 인건비의 50%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산정 가능.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별표] 해당하는 경우, 신규인력 24.7백만원 포함한 지원금 70%이내 산정) ⇒ 선정 후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 불가 ○ 대학 및 출연연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한해 참여율을 10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 가능. 단,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 ⇒ 인건비 한도 : 지원금의 35% 이내 ○ 공통적용 : 급여총액에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 ☐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원금 35% 이내) ○ 학생연구원 인건비 : 참여율 100%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박사과정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2,2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3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산정불가 ※범용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산정 불가 ○ 단일 물품(장비, 재료, 시제품 등)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장비, 시제품,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세 목	내 용
	(협약 시 견적서 첨부 필요) * 사업 선정평가 이후 장비 구입비 편성 불가 ○ 시약 및 재료 사용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구매예정내역 첨부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산정가능 - 접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 (지원금 30%이내 산정) ○ 국내외여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 - 국외여비 지출은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시 지원금의 3% 이내에서 편성가능 - 여비는 소속기관 자체기준에 의해 산정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 ○ 전문가활용비 -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30만원/일 한도) - 자체 기준이 없을시 전북테크노파크 전문가활용비 산정기준으로 지급 - 동일인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 이중지급 불가 - 사업협약체결시 수행기관 전문가활용비 지급 자체 기준 자료 제출 ○ 위탁정산수수료 : 회계법인의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로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 [별표 1]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참조 ○ 사무용품비 -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슬라이드제작비 등 - 접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 ○ 과제와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등은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세미나·문헌구입비 - 학회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 경비는 불인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항목의 경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세 목	내 용
	있을 경우 이를 준용 ○ 회의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편성가능 - 식대·다과 : 15,000원 이내/인 × 참여인원 × 횟수 - 회의비 집행 증빙자료 필수 첨부(회의록, 서명록) · (주관기관/참여기관)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산정불가
연구수당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수당 편성불가 · 참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해당기관의 현금 인건비의 10%이내 산정 가능
간접비	· 기관공동운영경비 :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비영리기관만 산정 가능) ⇒ 참여기관 지원금의 5% 이내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연도에 본과제와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별표 1】 정산수수료 표준 보수액

○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구 분(사업비 규모)	표준보수액(천원)
5천만원 미만	6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
※VAT 포함 금액	

※ 사업비 규모의 산정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의 합을 기준으로 함.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